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0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최혜영·서영석·김영호

인재근 · 전혜숙 · 변재일

황운하 · 장경태 · 장혜영

김민철 · 오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내용과 제2항에 따른"을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으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생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
	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
	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
	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u>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u>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
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u>②</u> ~ <u>⑤</u>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u>내용과 제2항</u>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u>제4항</u>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변위와 단계적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
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
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
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 무
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underline{3} \sim \underline{6}$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⑦</u>
<u>내용, 제2항에</u>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
용, 제3항
<u>제4</u>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u>제5항</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